

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공원
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9 월 23 일

여 수 시 장 서 매하



여수시 조례 제2306호

붙임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1조의2(금지행위) (생략) <신설>	제41조의2(금지행위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 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